

#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### 1. 제 안 경 위

- 발 의 자 : 남궁역 의원 외 20명
- 의안번호 : 제1559호
- 발의일자 : 2024년 2월 5일
- 회부일자 : 2024년 2월 7일

### 2. 제 안 이 유

-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이식수목, 기증수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, 다양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.
- 또한, 도시녹지의 시민참여 관리를 위해 협약체결, 물품 지원 등에 대해 개정하고자 함.

### 3. 주 요 내 용

- 가. 나무은행에 주택재건축, 재개발, 각종 정비사업시 이식된 수목을 녹지관리청은 녹화사업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, 이식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35조제1항 및 제2항).
- 나. 개인, 회사, 단체, 법인이 참여하는 녹지의 실명관리시 협약을 체결하여 실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36조제3항).
- 다. 녹지를 실명으로 관리하는 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(안 제36조제4항).

#### 4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비대상사유서)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## 5. 검토 의견

### 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이식수목과 기증수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도시녹지의 시민 참여 관리를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### 나. 검토의견

- 서울시는 주택재건축시행이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으로 인하여 수목의 이식이 불가피한 경우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‘나무은행’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, 이를 통해 수목을 예치(지장목 등 일정기간 보관 및 관리)하고 수목을 알선(온라인 나무나눔 공간을 통한 알선)한 바 있음.
- 그러나 수목의 입출·관리·보관의 어려움으로 인해 ‘수목의 예치’는 일부 자치구에서만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는 ‘예치’보다는 ‘알선(나무나눔)’ 위주로 사업을 추진<sup>1)</sup>하였으며, 기증하는 수목이 있을 경우 녹화사업대상지에 직접 이식하거나 수요처에 알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음.
- 안 제3조제8호 및 제35조제1항에서 주된 사업방식인 ‘나무나눔’으로 수정(정의)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, 수목을 재활용하여 녹화사업에 제공하고 재활용 수목의 이식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은 사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타당하다 판단됨.
- 안 제36조제3항(녹지의 실명관리)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현재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녹지관리 문화확산을 위해 ‘나무돌보미’ 사업<sup>2)</sup>

1) ‘나무나눔’ 사업 추진계획(공원녹지국, 조경과, 2012. 3. 7.)

2) 2024년 나무돌보미 사업 추진계획(조경과-631, 2024.1.16.)

으로 추진하고 있으며, 도시녹화 자원봉사에 관심있는 시민, 단체, 기업 등과 협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음.

동 사업<sup>3)</sup>은 지난 2000년부터 실시한 것으로 위촉장을 수여하고 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지만 최근에는 단순히 위촉장을 수여하는 것보다 세부내용을 정해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.

---

3) 내 손안에 서울(2005.4.25.), “시민이 직접 푸른 서울 가꿔요” 녹지관리실명제, 녹지관리실명제는 시민이 생활주변의 녹지를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지난 2000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. 현재 시내 25개 자치구의 공원, 마을마당, 녹지대, 가로수 등 1천757개곳에서 1만 명의 그린오너가 활동하고 있다.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개인, 단체, 회사 등을 그린오너 (Green-Owner)라 하는데 청소, 물주기, 꽃심기, 잡풀 뽑기, 수목표찰 달기 등 현장활동 그린오너와 공원·녹지관리 기술을 제공하는 기술지원 그린오너로 구분한다. 자치구에 참가신청한 후 위촉을 받아 활동한다.